

정수관리대상물품중소형화물차량취득동의의견

심 사 보 고 서

총무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1992.7.20일 남구청장 제출

나. 회부 일자 : 1992.7.22일 회부

다. 상정 일자 : 제14회 남구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1992.7.27일) 상정, 의결

2. 제안 설명 요지(제안설명자 : 재무과장 황경조)

가. 제안 이유

세질서 새생활 실천 운동과 급격히 증가하는 행정 수요에 대처하기 위한 행정의 기동력을 보강하여 대민 봉사에 만전을 기하고자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1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 승인을 요구하는 것임.

나. 주요 골자

0. 차량 정수 배정에 의한 차량 구입(소형화물차 16대)

- 지역교통과 1대.
- 도시정비과 1대.
- 대연4동의 13개동 14대

3. 전문위원 검토 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어무상)

품 명	사용 부서	수 량	의 견	비 고
소형 화물차	지역교통과	1 대 (1톤 코란도 3인승벤)	'부족한 정수 보충(정수2대중 부족 1대) '법령위반 차량 단속에 적극 활용 '기존 1대만으로 새질서, 새생활 시책 업무의 중점 업무인 교통지도 단속을 효율적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신 규 취득
	도시정비과	1 대 (1톤 캡)	'부족한 정수 보충(정수1대중 부족 1대) '가로등 정비와 불법광고물 단속등 광고물 관리에 활용 '도시정비 및 법질서 계도용으로 이용	"
	대연4동외 13개동	14대 (1톤 캡)	'부족한 정수 보충(동별 1대) '신속한 기동력 확보로 대민봉사 행정에 적극적인 대처 '현재 5개동에서 사용중에 있고 이용 효과는 매우 큼. '금번 취득이 되면 19개동에서 취득이 되고 나머지 11개동은 년차적 계획에 의거 93년도에 취득 예정임. (93년에는 전동 차량 보유) '다만, 취득된 차량이 이용도가 높고 효과 가 매우 큰 것은 사실이나, 전문기사 미확보로 인한 각종 사고등의 문제점은 서울시의 동에서 수년전부터 기사를 채용하고 있음을 감안 부산시 기획 관리실에서도 년차적으로 기사 확보를 긍정적 으로 검토하고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

4. 질의 및 답변 요약

질의자	답변자	질의요지	답변요지
배종환 의원	총무 과장 이영환	'동에 배정된 소형자동차에 대한 세부 계획등을 충분한 설명 요망	<p>'망미동에 차량을 배정하였으나, 면허증을 가진 직원이 없어 광안1동에 우선 사용토록 잠정적으로 배정한 사례가 있음.</p> <p>'현재 면허증을 가진 동직원이 134명이 있고 (최소 2명, 최대 8명) 동별 특별히 미숙한 면허 소지자는 도로 연수등을 통하여 운전이 지장이 없도록 별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이며, 특히 미숙하거나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인사이동을 하여서라도 운전이 가능토록 조정하겠음.</p> <p>'동에서 자동차를 주로 많이 이용하는 곳은 무허가 건축물 순찰, 재해 예방 순찰, 방역 활동, 자율 방범활동, 산화 경방 순찰, 영세민 양곡 수송, 각종 행사시 인원 승차및 구역서 각종 관행물 수령등에 특히 많이 사용됨.</p> <p>'동별 운전 직원 1명 고정 배치 문제(정수추정)는 서에서 적극 검토중에 있음.</p>

박한성 의원	총무 과장 이 영 환	'금번 소영화물차량취득동의의 견이 동의되면 19개동에서 취득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 는데, 나머지 11개동에는 어떤 기준에 의거 배치되는지 소상 한 설명 요망	'동별 면적, 인구, 산이 많은 지 여부, 재해예방지역, 무어 가 건축물, 영세면 숫자, 간선도로 길이등 일정한 기준 에 의거 연도별로 배정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임종하 의원	기획감사실장 장 식 조	'차량 관리 보험료등은 예산에 책정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책이 있는지 설명 요망	'보험료, 유지관리비등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으며, 추경에 편성하여 지출하거나 추경이 안되면 예비비를 사용 하여 지출할 것임.

5. 토론 요지

가. 찬성(이철형 부의장, 조해수 의원, 배종환 의원)

0. 구청에서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아 제13회 남구의회 임시회시
부결된 것으로서 금번에도 부결된 부분에 대하여 이해가 되도록
충분한 설명이 되지 않는 것은 유감스럽게 생각되나 동행정 활성화
를 위한 차원에서 동에서 꼭 필요한 차량이므로 동의 의결하여 줄
것을 협조 당부

6. 심사 결과 : 원안 가결